

★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법 ★

식중독이란?

- 식중독이란 병원성 미생물이나 유독 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여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. 섭취된 식품의 특성에 따라서 30분에서 10일 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
- 가장 최근에 섭취한 식품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기 몇일 전에 섭취한 식품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
- 음식물을 섭취한 후 일반적으로 12~24시간 이내에 설사, 구토, 두통, 오한 등 증상이 발생하며 불규칙한 심장박동, 호흡곤란, 마비 증상 등이 올 수 있습니다.



집단급식소에만 해당

- 최근 1년 이내에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의 설치·운영자에게 처음 발생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
- 최근 1년 이내에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의 설치·운영자에게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
(「식품위생법」 제101조제2항제10호 및 영 제67호)

식중독 발생 원인

- 식품을 충분히 가열하지 않을 경우 발생합니다.
- 조리 후 음식을 실온에서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발생합니다.
- 비위생적인 기구와 용기를 사용할 경우 발생합니다.
- 개인 위생이 불량할 경우 발생합니다.
- 비위생적이거나 안전하지 못한 식품을 사용할 경우 발생합니다.



식중독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

식중독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급식을 중단하고 급식 현장을 그대로 보존합니다.

● 왜 신고해야 하나요?

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여 식중독이 다른 사람에게 확산되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. 식중독 환자 파악, 현장 조사, 보존식 수거 등 신속한 조사 협조를 통해 식중독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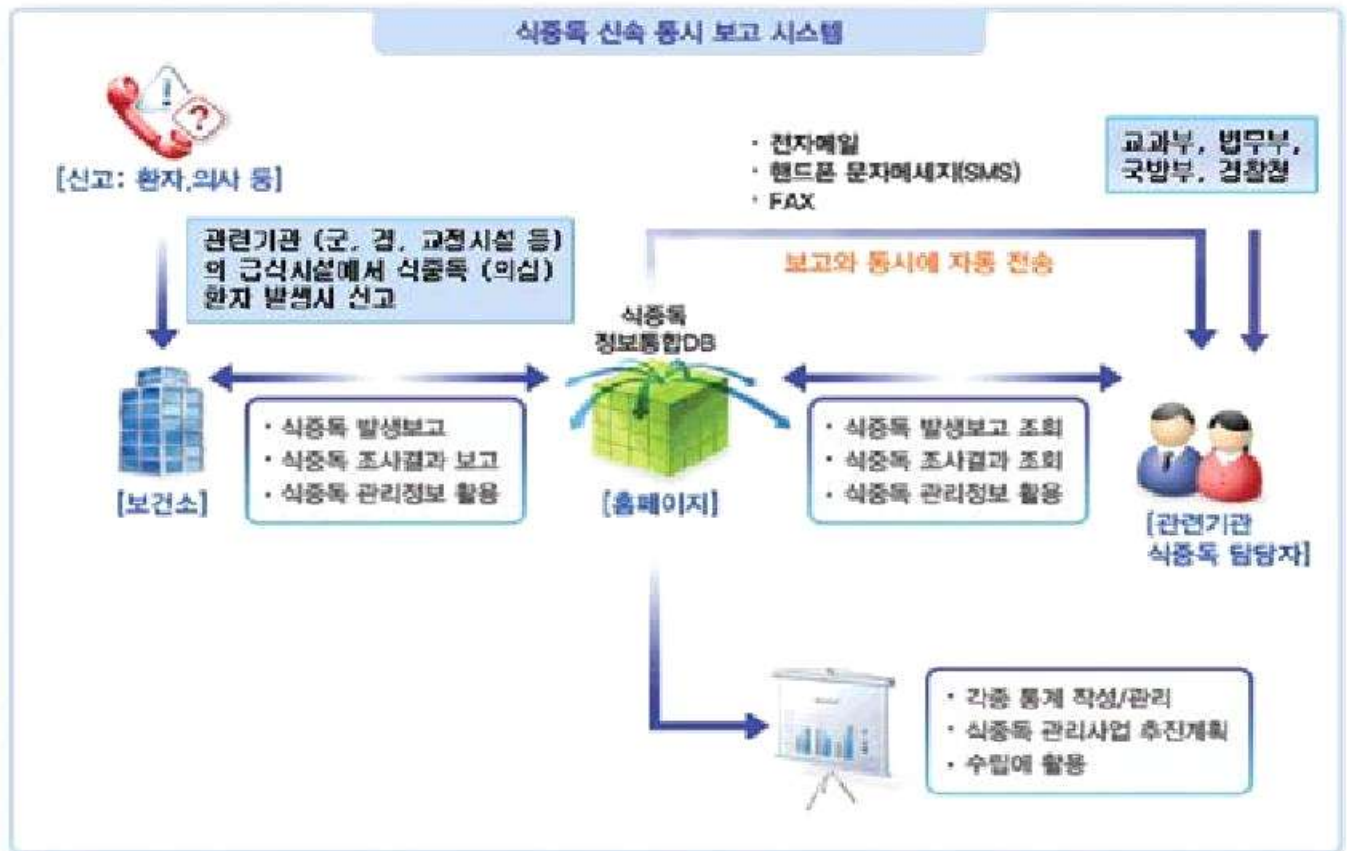
● 누가,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?

식중독이 의심되거나 식중독 의심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식중독 의심 환자를 진단한 의사 또는 한의사,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. (의무 신고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)

●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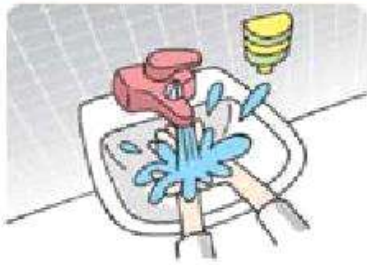
가까운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신고합니다.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'건강신문고' 또는 '식중독 신고' 란을 통해 신고합니다.

식중독 신속 동시보고 시스템



(자료 : 식품의약품안전청, 식품안전관리지침, 2011)

① 손씻기의 생활화



작업 시작 전, 작업 공정 바뀔 때,
화장실 이용 후, 배식 전 등

② 개인 위생관리 철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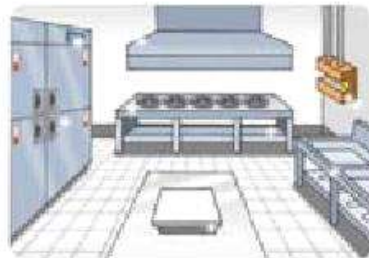
깨끗한 복장 유지

③ 깨끗한 물 사용



지하수는 반드시 끓여서 사용

④ 조리실 내부 청결



항상 청결 유지

⑤ 의심 식품 사용 금지



⑥ 계절별 우려식품 사용 자제

